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김태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615 발의연월일: 2025. 4. 7.

발 의 자:김태선·김병주·김영환

윤준병 • 정준호 • 김남근

김영배·허 영·위성락

장철민 • 박홍배 • 김주영

박 정 • 이학영 • 박균택

윤종군 의원(16인)

제안이유

2025년 3월 21일 울산, 경북, 경남지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발생한 초대형산불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166배에 달하는 48,239ha의 산림이 파괴되었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해 30명의 소중한 국민이 목숨을 잃고, 중상과 경상을 합쳐 45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존엄한 삶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주택 3천여동이 불타고, 문화재 29개 소가 소실되며 인명과 재산 피해에서 역대 최대규모의 산불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초대형산불로 인해 집과 삶의 터전을 잃고 망연자실하고 있는 피해 자들의 일상 복귀 지원과 건강·재산 피해에 대한 구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내란으로 인 해 촉발된 국가시스템의 작동이 원활하지 않은 지금 초대형산불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합니다. 이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주거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적기에 시행하고, 심리상담 등 다방면의 지원을 통해 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안정과 회복을 도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2025년 3월 21일부터 2025년 3월 30일까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의성군·안동군·영덕군·영양군·청송군, 경상남도 산청군·하동군·김해군, 전라북도 무주군, 충청북도 옥천군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이라 한다)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와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해 피해지역의 안정과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국가가 재해 예방 및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확인하고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 관련 배상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 배상 및 보상 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
- 다. 배상금은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민법」 및 「국가배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을 말하고, 국가는 「민법」 제469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대위변제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는 피해자에게 위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해야 함(안 제8조).

- 라. 국가는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과 관련하여 구조·수습에 참여함으로 인해 사업장 운영, 근로 등의 생계활동에 피해를 입은 사람 등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 복구·수습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입은 손실을 보상해야 함(안 제9조).
- 마.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6 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신청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며,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함(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 바. 국가는 위원회의 지급결정 및 임시지급결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신청인의 국가 외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도록 함(안 제18조).
-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 구제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보건·의료·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며,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 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도 불구하고 피해지역 주택 복구비

- 에 대한 국고 지원 부담률을 70퍼센트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국가 가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로 발생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재산 피해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및 제24조).
- 자. 국가는 피해자에게 주거지원금,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고, 피해자가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하여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8조).
- 차. 국가는 이 법에 따른 금전적 지급이나 그 밖의 지원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또는 착오 등으로 지급·지원된 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배상금·위로지원금·보상금 및 주거지원금 등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8조 및 제39조).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2025년 3월 21일부터 2025년 3월 30일까지 울산 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의성군·안동군·영덕군·영양군·청송군, 경상남도 산청군·하동군·김해군, 전라북도 무주군, 충청북도 옥천 군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이라 한다)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해 피해지역의 안정과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이란 2025년 3월 21일부터 2025년
 3월 30일까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의성군・안동군・영덕군・영양군・청송군, 경상남도 산청군・하동군・김해군, 전라북도무주군, 충청북도 옥천군에서 발생한 산불을 말한다.
- 2. "피해지역"이란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과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말한다.

-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울산· 경북·경남 초대형산불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 가.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 당시 피해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자
 - 나.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 당시 피해지역에서 사업장 운영, 근로활동 또는 학업수행 등을 하고 있던 자
 - 다.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 당시 피해지역에 동산·부동산을 소유했던 자
 - 라. 그 밖에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 당시 피해지역에 체류 중이었던 자 등 피해지역과 관련이 있는 자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국 가 등"이라 한다)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회복과 안정을 위한 종합 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② 국가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지원을 위해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에 관련된 피해 배상 및 보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 한다.

제2장 배상 및 보상 등

- 제5조(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 배상 및 보상 위원회) ① 국가가 재해를 예방 및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 할 의무를 확인 하고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과 관련하여 배상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 배상 및 보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 1.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배상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 2. 제17조에 따른 임시지급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 1. 법관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사람
 -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한 사람
 - 3. 보건·의료·복지·고용 등 피해자와 피해지역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 4. 배상 및 보상업무 등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피해자 대표

-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 ③ 위원회에는 제5조 제1항에 따른 심의 · 의결에 필요한 사실관계확인, 관련 자료의 수집과 검토 등을 위한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사실조사 등) ① 위원회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 결하는 데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하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한다.
 -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험자나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배상금 및 위로지원금의 지급) ① 배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민법」, 「국가배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금
 - 2. 국가가 제1호의 손해배상금 지급의무가 있는 국가 외의 자에 대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것을 전제로 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대위변제하는 손해배상금 상당의 금원

- ② 국가는 「민법」 제469조제1항에 따라 제1항제2호의 손해배상금을 대위변제할 수 있다.
- ③ 국가는 피해자에게 위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해야 한다. 위로지원금 지급의 기준·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피해의 정도,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9조(손실의 보상)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입은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 1.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과 관련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함으로 인하여 본인의 사업장 운영, 근로 등의 생계활동에 피해를 입은 사람
 - 2. 그 밖에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의 복구 및 수습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
 - ② 제1항의 보상금의 기준은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과 제1항 각 호의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그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해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배상금 등의 지급신청) ① 제8조 및 제9조의 배상금·위로지원 금 및 보상금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이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일정기간 이상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신청할 수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 제11조(신청인의 진술권) 신청인은 위원회의 심의 절차에서 배상 및 보상 금액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2조(지급결정) 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 2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사실조사 등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3조(결정서의 송달) ① 위원회가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4조(재심의) ① 제12조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제13조에 따른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재심의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조 중 "120일"은 "30일"로 본다.
- 제15조(신청인의 동의와 배상금 등의 지급 등) ① 배상금ㆍ위로지원금

및 보상금 결정서정본(재심의 결정서정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 ② 신청인이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의 지급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위원회에 하지 않은 경우 이 법에 따른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의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지급결정 동의의 효력) 위원회의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 금 지급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국가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제17조(임시지급 및 정산)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인의 서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배상금의 일부를 임시로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결정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해야 한다.
 - ③ 신청인은 제1항의 결정에 의하여 임시로 지급받은 금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배상금보다 큰 경우 그 차액 및 「민법」에서 정한이율에 따른 이자를 반환해야 한다. 다만, 지급받은 날부터 배상금

- 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날까지의 이자는 제외한다.
- 제18조(국가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등) 국가는 제12조의 지급 결정 및 제17조의 임시지급결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신청인의 국가 외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 다.

제3장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등

- 제19조(지원의 원칙) ① 국가 등은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 구제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② 국가 등은 피해자가 신체적·심리적 안정에 필요한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통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 제20조(피해자 등의 참여 보장) 국가 등은 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해 야 한다.
- 제21조(피해지역에 대한 경제 활성화 지원) 국가는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과 관련하여 피해지역의 경제 회복 및 활성화를 위해 특 별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시행해야 한다.
- 제22조(주거지원금 등) ① 국가는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이 하 "주거지원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 1. 주거지원금: 피해자의 주거 보조에 필요한 비용
- 2. 생활지원금: 피해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
- 3. 의료지원금: 피해자의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
- ② 주거지원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③ 주거지원금등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지급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주거지원금등에 대하여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제2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3조(주택 복구를 위한 국고보조 등에 관한 특례)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도 불구하고 피해지역 주택의 기둥・벽체・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파손되어 개축 또는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주택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그 복구비에 대한 국고 지원의 부담률은 70퍼센트 이상으로 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개축·수리의 기준 및 국고 지원의 부담률 등 주택 복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복구 지원) ① 국가는 피해지역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하여 강원산불로 발생한 사업장 건축물·시설물 등의 재산 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 을 지원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의 범위·산정기준 및 지원금 결정기준 등 복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긴급복지지원법」 및 「아이돌봄 지원법」 등에 대한 특례)
 -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피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본다.
 - ②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관련된 활동으로 피해자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아이 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기간·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조(피해자의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국가 등은 금융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27조(심리상담 등의 지원) ① 국가 등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28조(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 ① 국가는 피해자 가 강원산불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하 여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근로자의 치유휴직) ① 사업주는 피해자인 근로자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휴직(이하 "치유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한다.
 - ② 치유휴직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 ③ 사업주는 치유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치유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치유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0조(근로자의 치유휴직 지원) ①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치유 휴직을 허용한 경우 그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 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비용의 지급 내용,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1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시행) ① 국가 등은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
 - 1. 성별 나이 직업 등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특성
 - 2.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지역사회 이탈 방지, 삶의 질 향상
 - 3. 건강·복지·문화·체육 등 피해지역에 소재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단체 및 동호회 등의 참여와 연계
 - ② 국가는 피해지역이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의 내용·방법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국가등은 제1항의 프로그램 개발에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 ④ 국가등은 제1항의 프로그램 개발·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 제32조(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 ① 피해지역은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과 건강·복지·돌봄·노동·문화 등의 서비 스를 제공하는 복합시설을 국가와 협의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의 장은 효과적인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에게 피해지역 주민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과 건강·복지·돌봄·노동·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해야 한다.

- ③ 국가는 피해지역이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장 보칙

- 제33조(국가등의 구상권 행사) ① 국가 등은 재난구호 및 추가 피해 발생 방지 등을 위해 인력·장비 등을 동원한 경우 이에 소요된 경 비를 선지급할 수 있다.
 - ② 국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출한 경우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1. 제8조에 따라 지급한 배상금
 - 2. 제9조에 따라 지급한 보상금
 - 3. 제1항에 따른 선지급금
 - 4. 그 밖에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 이후 복구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 제34조(중복지원 제한) 이 법에 따른 각종 지원은 이 법 시행 당시 울 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로 인하여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지원할 수 있

다.

- 제35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위원·직원이었던 자,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6조(자격사칭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7조(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라 발생한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제38조(배상금 등의 환수) ① 국가 등은 이 법에 따른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 주거지원금 등 금전적 지급, 그 밖의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은 환수해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지원받은 경우
 - 2. 착오 등으로 지급 또는 지원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그 반환할 자가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않은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제39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적 지급 또는 지원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8조에 따른 배상금 및 위로지원금
- 2. 제9조에 따른 보상금
- 3. 제22조에 따른 주거지원금등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35조를 위반하여 비밀준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람
- 2.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원·직원의 자격을 사칭한 사람
- 3.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한 사람
-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